

의료기관 세탁물처리 위탁용역 시방서

1. 사업개요

본 사업은 보건환경위생 서비스업으로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 또는 사용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세탁함으로써 세탁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1) 의료기관 세탁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모든 세탁물을 말한다.

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 :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한 의류)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썬우개류, 수거자루 등.

2)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오염세탁물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기타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세탁물 중 기타 세탁물 :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로 혈액이나 체액 노출 위험이 높은 수술실 및 중환자실 의료진 근무복을 제외한 근무복 (의사 자켓 및 전공의 근무복, 간호사 근무복, 기타 직원 근무복, 등)

3. 세탁물 처리업소 준수사항

가. 지정 및 시설기준

1)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거 처리업자 지정.

2)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에 의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

나. 세탁

1) 세탁물은 완전히 삶은 공정을 거쳐 세탁물 공급이 환자에 직접적인 영향 끼침을 깊이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 방지에 노력한다.

2) 세탁시 사용하는 세제는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가 나는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모든 세탁물은 (의사, 간호사 가운은 제외) 별첨 세탁 공정도에 의하여 세탁을 실시하며, 의사, 간호사 가운 중 기름때가 묻은 것은 드라이클리닝 처리한다.

4) 세탁물은 일반 세탁물과 오염 세탁물을 구분 세탁한다.

- 5) 수거한 오염세탁물은 세탁 전 소독과정을 거친 후 세탁한다.
- 6) 사용 후 세탁물(일반/오염세탁물)과 사용 전 세탁물은 구분하여 보관 한다.

다. 수선 및 재 세탁

- 1) 세탁물 세척시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이 발생시는 수선하여 수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한다.
- 2) 세탁시 재 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이 발생시는 재 세탁하여 완성 후 수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한다.

라. 운송

- 1) 세탁물은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수거하고 수선품과 재 세탁이 요구되는 세탁물을 제외한 모든 세탁물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 2) 세탁물 수거차량은 밀폐된 시설 또는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 악취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세탁 전 운반차량과 세탁 후 운반차량을 분리하여 운반하고 차량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한다.
- 3) 완성된 세탁물은 병원 등의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밀폐된 차량에 의하여 운반한다.
- 4) 세탁물은 매일 수거(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여야 하고, 수거한 세탁물은 즉시 원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연휴가 2일 이상일 경우에 본 병원이 원할시는 즉시 응해야 한다)
- 5) 세탁물 수거시간은 통상 8:00 ~ 10:00로 하며 수거차량으로의 상차는 “을”이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세탁과정(운송포함)에서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파손 또는 물품의 변형, 변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세탁물에 대한 현물이나 구입가격 등 본 병원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한다.

나. 세탁물 세탁처리 과정에서 폐기하여야할 세탁물이 있을 시는 이를 별도 분리하여 반품한다.

다. 세탁물 처리업소에서는 완성된 세탁물을 납품 시 매일 종류별 거래명세표를 작성 제출한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다.

마. 아래 품목은 세탁물을 규격대로 접어 납품하여야 하며, 손상된 물품은 수선 처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1). 수술실 세탁물 : 시트, 수술가운
- 2). 중앙부 세탁물 : Lapa 포, 시트, 가운, 소공포

바. 직원 근무복(의사가운, 간호복)등은 해당업체에서 각 부서별로 수거 배달한다.

5. 추가요구사항

가. 세탁상태가 불량없이 깨끗한 세탁이 되어야 한다.

나. 세탁물사이 이물질(먼지,벌레,머리카락)이 없어야 한다.

다. 수선 필요시 반드시 빠짐없이 수선하여야 하며, 수선이 불가능한 것은 별도로 포장하여 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송시 커버를 씌어 배송하여야 하며, 타병원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 운반카는 매일 소독하여야 하며, 운반카 커버는 깨끗 하여야 한다.

바. 착용시 가려움증이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첨 부 : 세탁 공정도 1부 끝.

2024. 01.